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6.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 차

1 절차사무 및 선거관리 신뢰성 확보 관련

- 1-1.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선거관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 11
- 1-2. 투·개표 사무원으로 인한 선거관리 부실 예방을 위해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 구축 및 교육 강화 방안 마련 12
- 1-3. 사전투표 제도의 본투표 준용 원칙 확립을 위해 투·개표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선거 신뢰성 저해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 13
- 1-4. 공정선거참관단의 전국 단위 확대 운영과 인적 구성 다양화 등 활동 범위 확대 방안 마련 18

2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관련

- 2-1. 당비 대납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처리 계획 수립·공개 19
- 2-2.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선거범죄 대응 공백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지휘 체계 정비 및 지방선거 대비 대응 종합계획 마련 20

2-3. 외부 세력의 조직적 정당 활동 및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 가입 실태와 정치자금 흐름에 대한 점검 강화 등	21
2-4. 부정선거 및 혐오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 및 처리 현황의 체계적 관리	22
2-5.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당내 경선 참여 시 공적 자원 동원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점검·조정하고 필요시 고발 등 엄정 조치	23
2-6. 정당 및 선거 관련 위법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과 조치를 통해 중립성과 신뢰 회복	24
2-7. 정당사무소와 선거사무소의 법적 지위와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선거운동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25
2-8. 단체·조직을 이용한 정당가입 유도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고발 등 엄정 조치	26
2-9. 대통령실 부속실장 통화 녹취 관련, 「공직선거법」상 조사 개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등	27
2-10. 선거 관련 ‘정당한 비판’과 ‘비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정립 등	28

3

법규운용 관련

- 3-1.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각급 위원회 간 해석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29

4

선거구획정 관련

- 4-1.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가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31
- 4-2. 지방의원 의원정수 산정 관련 인구 기준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세부 기준 등 선거구 획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 31
- 4-3. 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특수성 고려,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32

5

제도개선 관련

- 5-1. 외국인 지방선거권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검토 의견 마련 33
- 5-2. 당원 가입 및 정치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실효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방안 검토 34

5-3. 부정선거 및 가짜뉴스 관련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고,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제시	35
5-4. 종교시설의 정당 사무소 사용 관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 및 정당 사무소 설치 요건 구체화 등 검토	37
5-5. 민주헌정질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시 선관위가 입법 과정 적극 협조	38
5-6. 현직 유지 출마 규정의 형평성 문제와 의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국회의원 선거구가 복수인 지역의 정당사무소 설치 기준 개정 필요성 검토	39
5-7.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시 허위·비방 등 실질적 위험 요소 중심의 제도개선 및 탐지 프로그램의 장기적 무상 활용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마련	40
5-8.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검토	41
5-9. 정치자금 배분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토대로 소수정당 배분 비율 확대 및 득표수·정당 수입 연동 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 ..	42
5-10. 선거운동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용게시대·전자게시대 설치 등에 관한 선관위 차원의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43

5-11. 투·개표소의 질서와 선거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질서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종합적 재검토	44
--	----

6 재외선거 관련

6-1. 재외선거관 제도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 및 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 마련	46
6-2. 재외선거 투표율 향상 및 재외선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47
6-3. 재외선거 정보 제공방식·시점 재검토 및 재일동포 간담회 이후 제기된 의견 반영 등 반복·구조적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48

7 선거보도심의 관련

7-1. 선거방송심의위·선거기사심의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를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통합 선거보도심의체계 구축 방안 검토	49
7-2. 선거보도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매체별·분산된 선거 보도 심의체계를 통합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	50

8**정치자금 관련**

- 8-1. 선거비용 미반환 금액에 대한 징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 행정적 조치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55
- 8-2. 선거보전금 미반환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구체적 개정안 검토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 56

9**위원회 조직·인사·운영 관련**

- 9-1. 인사 비위 관련 일관된 엄정한 징계 기준 적용 및 실효적인 조직 쇄신 대책을 마련하여 대국민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 57
- 9-2. 선관위원장 상근제도 도입 검토 58
- 9-3.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외부인사 참여 확대 및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 59

10**정당 관리 관련**

- 10-1. ‘현수막 정당’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위법 사항 확인 시 고발 등 엄정한 조치 60

11

민주시민교육 관련

- 11-1. 청소년 대상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차단 등을 위해 민주시민·선거 교육 활성화(선거교육 지원 관련 입법) 방안 마련·추진 61

12

위원회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 12-1. 위원회 전산망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적 보안 점검 등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62
- 12-2. 투표 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장애·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망 및 서버·배터리 물리적 분리 등 선거 전산 시스템 안전성 강화 대책 마련 63
- 1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가중요시설 지정 추진과 전산·서버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및 재해복구 체계 등을 종합 점검하여 유사 상황 재발 방지 64

13

감사 관련

- 13-1.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구조적 개선 대책 마련 및 감사원 수준에 준하는 구체성과 투명성을 갖춘 감사결과 공개 방안 검토 66

- 14-1. 위원회의 독립성과 헌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단호한 법적 조치 및 수사와 별도로 선관위 차원의 법적
 대응 방침 등을 명확히 수립하여 보고 67
- 14-2. 선거관리시스템 등 핵심 전산 인프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및 선거 직전 계약 변경 등 위험
 요인 최소화 68
- 14-3.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 성과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존 자문기구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69
- 14-4. 계엄 및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직원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장기적인 정신건강 보호 대책 마련 70

1

절차사무 및 선거관리 신뢰성 확보 관련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선거관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 형태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사전투표함 등 보관 장소 CCTV 공개 확대,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개표 시 수검표 절차 추가 도입 등 선거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사전) 투·개표 절차 등을 마련하였음.
 - (사전투표함 보관·관리) 우편투표 접수 전 과정 정당추천 위원 참여, 중앙 및 시·도위원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내사전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하게 제작
 - (개표 확인·심사) 투표용지교부수 기재 적정여부 및 투표함 개함 시 투표함 내 잔여투표지 확인 철저, 개표 수검표 절차 유지
 -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공정선거참관단 전국 단위 확대 실시, 정당·학화·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사로 참관위원 구성, 후보자등록부터 개표진행까지 전 과정 참관
- 앞으로도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및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 위촉된 투·개표 사무원으로 인한 선거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발·교육·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선거관리 인력 확보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업무의 전문성·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위촉 확대 추진 중임.
- (사전)투·개표사무원 대상 교육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관리 매뉴얼 및 교육영상 개선, 소책자(교육교재) 신규 제작
 - 교육 횟수·대상 확대를 통한 구·시·군위원회 및 (사전)투표관리관 주관 교육 강화
 - 사이버교육 실시 등을 통한 사무원 위촉 예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기회 확대
 - (사전)투표사무원 교대근무 및 투표방법 개선

1-3. 사전투표 제도의 본투표 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본인확인·명부관리·투표·개표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선거 신뢰성 저해 요소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전투표는 선거일투표와 달리 전국 통합선거인명부 기반 운영, 투표용지 현장 발급 등에 따른 제도적·구조적 차이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바, 이러한 차이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절차를 참관·봉인·기록 등 다층적인 통제 체계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확인·투표·투표함 관리 등 핵심 절차에 있어서는 선거일투표와 동일한 관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투표와의 절차적 차이에 따른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선거환경 변화 및 국민 인식 등을 반영하여 현행 사전투표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음.

붙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관련 주요 개선사항 1부.

1 현행 사전투표제도 상 공정성 담보 절차

사전투표 개시 전	○ 사전투표모의시험 완료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단말기(노트북PC) 및 투표용지발급기 출력 부분 봉인 ○ 사전투표 개시전 매일(05:30경)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단말기 및 투표용지발급기 봉인 이상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기록 없음(0) 확인 ○ 보안USB에 보관된 사전투표관리관 인증서를 이용하여 통합명부시스템에 접속(보안USB비밀번호, 인증서비밀번호 입력) ※ 선거전용통신망은 타 통신망과 분리된 전용 폐쇄망으로 구성
사전투표 진행 중	○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이 투표진행 전 과정 참관 ○ 통합명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선거인 본인여부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이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를 통해서만 정규의 투표용지를 발급(선거인 신분증이미지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 ※ 사전투표용지 출력이력은 통합명부시스템에 기록·관리 ○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실시간 공개 확대
사전투표 마감 후	○ 매일 투표마감 후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단말기 및 투표용지발급기 출력부분을 사전투표관리관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 ○ 관외사전투표함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함하여 당일 관외선거인 투표용지 발급수와 회송용 봉투수를 확인,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 참관인, 호송 경찰과 동행하여 우체국장에게 인계 ○ 관내사전투표함은 후보자별 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매일 구·시·군위원회에 인계
사전 투표함 보관	○ 구·시·군위원회가 관내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을 때에는 참관인이 참관하고 정당추천위원이 사전투표함의 봉쇄·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보관 ○ 사전투표함은 CCTV 및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적치·보관 ○ 사전투표함 적치 시부터 보관장소 내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까지 CCTV로 녹화, 24시간 모니터링 및 열람·공개(영상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 ○ 보관된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과 구·시·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관련 주요 개선사항

1) [사전]투 · 개표사무원 교육 강화를 통한 실무 능력 확보

- ① 관리 매뉴얼, 교육영상 개선 및 소책자(교육교재) 신규 제작
 - (매뉴얼) 투표사무 일반절차와 사례별 대응방안 분리 구성
 - (리플릿) 부서별 담당사무원용 전체 배부용 소책자(브로셔) 제작
- ② 구·시·군위원회 및 (사전)투표관리관 주관 교육 강화
 - (위원회 주관) 사전투표관리관 대상 교육 횟수 추가
 - ※ (기존) 2회 → (개선) 3회
 - (관리관 주관) 사전투표일 전일 사전투표사무원 교육 대상 확대
 - ※ (기존) 사무원 일부 → (개선) 사무원 전체
- ③ 사이버교육 실시 등 상시 교육기회 확대
 - (공무원)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인재개발원 연계 사이버교육 강화(과정 조기 개설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교육 계기 이용 교육 실시 등
 - (일반인) 매뉴얼·소책자에 동영상 교육자료 링크 QR코드 삽입으로 재학습 등 접근 편의성 제고
- ④ 사전투표사무원 교대근무 및 투표방법 개선
 - 식사·휴게시간 등에 따른 교대근무 시 관리관과 직무대행사무원 동시 이석 금지 및 사전투표사무원은 장비별 2인 1조로 이석
 - 사전투표사무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른 투표사무원을 통해 투표 진행하도록 교육 철저
 - 담당 사무별 핵심 임무 교육 전 투표사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마음가짐 등 교육 실시를 통한 사명감·책임감 고취

2) 사전투표함 보관·관리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

- ① 우편투표 접수 과정 정당추천 위원 참여
 - 우편투표 접수 전 과정에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
 -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정당추천 위원이 자물쇠·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쇄·봉인하고 서명
- ②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 ※ 우편투표함 : 2026. 5. 22. ~ 6. 3., 관내사전투표함 : 2026. 5. 29. ~ 6. 3.
 - CCTV전용 폐쇄망 구축 및 비인가 장비 연결 불가한 보안성 강화
 - 중앙위원회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관제, 시·도위원회 실시간 열람용 모니터 설치·운영
 - ※ 중앙 및 구·시·군위원회는 신청에 따라 열람 운영, 시·도위원회는 별도 신청 없이 구·시·군위원회의 보관상황을 24시간 열람 가능
 - 구·시·군위원회 영상녹화장치의 이중녹화 조치 및 녹화영상 무결성 검증값 또는 전자서명 등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3) 관내사전투표함 개선 제작

- ① 선거인의 착오가 없도록 관내사전투표함(받침대 포함) 모양 변경



② 특수봉인지 부착 편의성 제고 및 훼손 예방

- 특수봉인지 부착지점 평면화 및 부착 유도선 표시
- 본체 내부 이음새 막음처리로 투표지 끼임 가능성 차단



4)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운영

- ①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불신 해소를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시행한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 단위 확대 실시
- ② 정당·학회·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사로 참관위원을 구성하여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

1-4. 공정선거참관단의 전국 단위 확대 운영과 인적 구성 다양화, 법적 제도화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투표용지 선정·인쇄 절차 확인 등 활동 범위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 선거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정선거참관단을 처음 도입하였고,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진단위) 시·도별로 추진하되,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세종·충북은 통합 운영*(13개 팀)

* 주관 시·도위원회 :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추진방법) 외부 기관·단체 위탁 운영, 시·도위원회 현장 지원

(운영기간) 선거일 전 30일(5. 4.) ~ 선거일

(참관단 구성) 정당,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자로 1팀당 8명 정도로 구성(총 104명 정도)

(참관내용) 투표용지 인쇄,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관리절차 주요 과정

- 향후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 운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제도화를 포함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2-1. 당원 당비 대납, 매표 행위, 조직적 경선 개입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일정 및 처리계획을 명확히 수립·공개할 것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2026년 2월부터 각 정당을 대상으로 예방·안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경선운동 및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및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였음.
- 우리 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경선 개입을 위한 당비 대납, 입당 강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과 광역조사팀 등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음.

2-2. 검찰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선거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지휘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범죄 대응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우리 위원회와 대검찰청 및 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단속 대책회의를 개최('26. 3. 20.)하여 선거사범 입건 현황 등을 분석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

※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에서도 각각 그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경찰청(서)와 단속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절차사무 관리, 법규운용, 위법행위 예방·단속, 공보·홍보 지침 등이 포함된 종합관리지침을 마련·시달('25. 12. 15.)하였음.

2-3. 종교단체 등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정당 활동과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 당원 가입 실태와 정치자금 흐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당원가입 실태 관련]

- 우리 위원회는 정당의 정기보고 및 정당·정치자금 사무 점검을 통해 법정 당원 수와 당비 납부 당원 수 현황, 당원명부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 다만, 현행법상 정당에 대한 감독의 목적으로 당원명부 열람을 강제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당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음.

[정치자금 흐름에 대한 점검 관련]

- 우리 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당,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회계보고를 받고 있으며, 회계보고서의 심도 있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위법 혐의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4. 부정선거 주장 및 혐오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정당사무 관할 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현수막 처리 현황을 체계적 으로 관리할 것

- 근거없는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향한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게 되어 사회적 유해성이 큰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적 규제가 필요함.
- 다만, 현행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상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조치 기준 마련에 한계가 있음.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등 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예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입법 논의 시 적극 지원 하겠음.

2-5.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등 공적 자원이 선거에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점검·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시 신속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안내책자 제작·배부, 자체 감찰강화 협조요청, 선거법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음.

2-6. 정당 및 선거 관련 위법 의혹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과 조치를 통해 선거관리 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것

- 우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특히, 각종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때에는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음.

2-7. 정당사무소와 선거사무소의 법적 지위와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정당선거사무소가 그 설치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또는 그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될 것임.

※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됨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 우리 위원회는 각종 계기를 통해 각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유사기관 관련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하고, 유사기관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

2-8. 단체·조직을 이용한 정당가입 유도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며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우리 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경고 등 조치를 하고 있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단체·조직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정당에 당원모집 및 당내경선 관련 제한·금지행위와 주요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불법적인 경선운동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된 때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임.

2-9. 경기도 국감에서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통화 녹취 내용과 관련하여, 시기·장소·행위자 특정 가능성을 포함하여 공직 선거법상 조사 개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신뢰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

-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따라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 등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도 없어서 조사권 행사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2-10. 선거 관련 표현행위에 있어 '정당한 비판'과 '비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향후 지방선거·총선 등 연속적인 선거 일정에 대비하여 일관된 적용이 가능한 관리 기준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당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바,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과 비방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에 동의함.
-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①사실을 적시하여 ②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 판례에 따르면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각각 의미하며, 후보자 등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은 모두 비방의 대상에 해당함.
- 의혹 제기나 허위 여부 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삭제요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바,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향후 '비방'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기준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도위원회 담당자 교육 강화, 시기별·사안별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등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3-1.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간 해석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지침 및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그 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

- 우리 위원회는 유권해석의 통일성·전문성 강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현행 추진상황 1부.

□ 직원 법규역량 강화사업

-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법규운용자료 책자 발간
- 법규운용능력 경시대회 개최(매년 1회)

※ 시·도별 자체사업 추진(집합교육, 객관식 평가, 참여식 실무연수 등) 병행

□ 법규운용기준 마련

법규 개정·주요사안 발생시 선거환경 변화와 선거특성을 반영한
운용기준 마련

□ 자문 활성화

자문이 필요한 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 질의답변의
상급위원회 사전심의·의견조회 및 직원 묻고답하기 게시판 운영

□ 위원회간 정보공유

통합법규안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각급 위원회간 질의답변 신속 공유,
법규운용 담당부서간 단체채팅방 운영을 통한 쟁점사안 공유 등

- 4-1.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가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4-2. 지방의원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하여 인구 기준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선거구 획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
- 선거구획정기구의 전문성·효율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와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을 모두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공감함.
 - 우리 위원회는 '26. 2.부터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구 획정 절차 및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 통합기구 설치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연구용역 결과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4-3. 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적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우리 위원회가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하는 절차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반적인 점검 실시는 어려운 점이 있음.
- 다만, 우리 위원회는 '26. 2.부터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 확정 절차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연구용역 결과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음.

5-1. 외국인 지방선거권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권자 규모 및 국적별 분포 변화, 실제 거주 여부, 국제적 상호주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

-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에 있어 상호주의 채택 등 선거권 부여 요건 강화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현재 상호주의 채택 및 체류기간 제한 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중이므로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겠음.

5-2. 정당 당원 가입 및 정치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실효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확인 권한 강화를 포함한 정당법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정당법」 별칙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에 준하는 권한 부여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법」의 취지상 조사 권한의 강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 위원회는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21. 5.)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강한 정당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위원회 개정의견('21. 5. 제출)>

□ 「정당법」 위반행위 조사권 및 자수자 특례 [신설]

-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49),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50),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52)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규정에 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당대표경선등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 당대표경선등에서의 매수행위와 같은 중대범죄는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범죄발견이 어려우므로 자수자 특례 규정을 두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의 자수를 유도하기 위함

5-3. 부정선거 의혹 및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홍보와 함께 고소·고발 및 판결 결과 공개 등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고, 허위 사실공표죄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 보호 관점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것

[부정선거 의혹 및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홍보 등 관련]

- 투·개표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설명자료를 게시하거나 보도자료·SN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법부 판결, 언론, 학계 전문가, 일반유권자 등의 시각을 반영한 객관적인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사실공표·비방 등)는 위반 경중에 따라 플랫폼사에 삭제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사 위법행위 재발 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음.
- 향후 부정선거 의혹 확산 차단을 위해 유권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선거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확한 선거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의혹 제기에는 올바른 선거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여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허위사실공표죄 입법 논의 관련]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경력등’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고,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서의 ‘행위’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으로 의율 가능함 [대법원 2017도4354(2017.6.19.선고)].
-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안임.

5-4. 종교시설을 정당 사무소로 사용하는 행위가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정당 사무소 설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시할 것

- 종교시설을 정당사무소로 사용하는 행위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종교시설 내 정당사무소 설치를 제한할지 여부는 정당활동의 자유, 정교분리 등 헌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겠음.

* 한병도의원안(2215606) : 중앙당과 시도당 등록신청시 종교시설을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

5-5. 반헌법적·반국가적 활동 논란이 반복되는 정당에 대해 정당 설립·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되, 민주헌정질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에 선관위가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

-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제8조의 취지 상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에 대한 관리·감독은 ① 「정당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형식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 ②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감독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한편,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맞게 정당 등록 취소요건을 정비하는 「정당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 ('21. 5.)한 바 있고,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겠음.

<위원회 개정의견('21. 5. 제출)>

□ 정당 등록취소 요건 정비 (「정당법」 §44)

-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제안이유: 현행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12헌마43)에 따라 그 등록취소 요건을 결정 취지에 맞게 현행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는 정당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5-6. 현직 유지 출마 규정의 형평성 문제와 의정 공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복수인 지역의 정당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을 정리하여 국회와 협의할 것**

- 해당 내용들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6. 3. 19. 시행되었음.

5-7.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허위·비방·모욕·협오 표현 등 실질적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탐지 프로그램의 장기적 무상 활용 또는 대체 수단 확보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허위·비방 등 실질적 위험 요소를 규제하는 방식의 제도개선 관련]

- 선거일 전 90일부터 전면 금지되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 규정에 대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허위·비방·모욕·협오 표현 등 실질적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함에 동의함. 다만, 허위 정보 등 가짜뉴스를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탐지 프로그램의 장기적 무상 활용 또는 대체 수단 확보 방안 관련]

- 자체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 요청 등 소관부처와 협의 중이며, 자체 프로그램 구축 전까지는 딥페이크 탐지도구를 지속적·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강화하겠음.

**5-8.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문제 해소 및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 중대선거구제(3~5인)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 방안,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공직자의 정수보다 적거나 같은 수의 후보자만이 있는 경우 어떠한 방법(무투표, 찬반투표 등)을 선택할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할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지는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 우리의 정치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제도개선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 충분히 공론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겠음.

**5-9. 정치자금 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거 선관위가 제시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토대로 소수정당 배분 비율 확대
및 득표수·정당 수입 연동 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합리적인 국고보조금 배분은 정당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만큼 정당의 보호·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됨.
-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앞으로도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겠음.

5-10. 전자게시대 도입 확산에 따른 선거운동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 개정 권고 또는 전용게시대·전자게시대 설치에 관한 선관위 차원의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권고 여부를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해소하는 등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 등을 위하여 전자게시대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전자게시대 등 설치·확대 및 관련 조례 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를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아울러,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방법 등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음.

5-11. 투·개표소의 질서와 선거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질서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현행 벌금형 중심의 처벌 수준이 물가 상승률과 사회적 위험성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처벌 수위 상향 필요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며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투·개표질서 방해행위에 대한 대책]

- 투·개표 질서 방해행위는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대와 출입구에 관련 안내문 게시 등 인쇄물·시설물과 온라인·언론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임.
- 이러한 안내·홍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과 공조하여 현행법 체포 등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임.

[처벌 수위 상향 필요성 관련]

- 투·개표 질서 방해행위는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함.

- 다만,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인바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결정 참조), 관련 입법 발의 시면밀히 검토·지원하겠음.

**6-1. 재외선거관 제도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근무
형태·업무내용·외국어 능력요건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재외선거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선거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외국어 구사능력보다는 선거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파견자를 선발하여 왔음.
- 우리 위원회는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향후 단기 재외선거관 선발 시
외국어 자격요건 충족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하는 등 재외선거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6-2. 재외선거 투표율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환경을 반영한 재외선거 관리 특별대책 수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예산 절감과 선거관리 노하우 축적을 고려하여 재외선거관 파견기간 조정, 적절한 재외선거의 홍보방식 대책 등 재외선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 우리 위원회는 재외선거 홍보 강화 및 인터넷 신고·신청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재외선거 투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위원회는 추가투표소 확대 등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은 관계기관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6-3. 재외선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방식과 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외동포 간담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재외선거 개선 대책을 구체화할 것과 함께, 재외선거 관련 주요 민원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반복·구조적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 위원회는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및 교통편 안내 부족, 재외투표에 필요한 유효 신분증·국적확인서류 관련 문의 등 반복되는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재외선거 절차사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선거시마다 온라인·인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재외선거의 특성상 투표를 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추가투표소 확대 등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검토 중에 있음.

7-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통합 선거보도심의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적 상설기구로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선거보도심의체계를 통합하는 방안 및 관련 법 개선 의견을 국회에 보고([붙임] 참조)하였으며, 향후 선거보도심의체계 통합 관련 법안 개정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음.
-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후 미디어·정치 환경을 고려한 선거보도 심의체계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임.

**7-2. 선거보도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매체별·분산된
선거보도 심의체계를 통합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적 상설기구로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선거보도심의체계를 통합하는 방안 및 관련 법 개선 의견을 국회에 보고([붙임] 참조)하였으며, 향후 선거보도심의체계 통합 관련 법안 개정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음.
-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후 미디어·정치 환경을 고려한 선거보도 심의체계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임.

선거보도 심의기구 통합설치방안 제출

1 검토배경

2025년 국정감사(기관)에서 현재 「공직선거법」상 매체별로 분리되어있는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통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요구

2 선거보도 심의기구 통합설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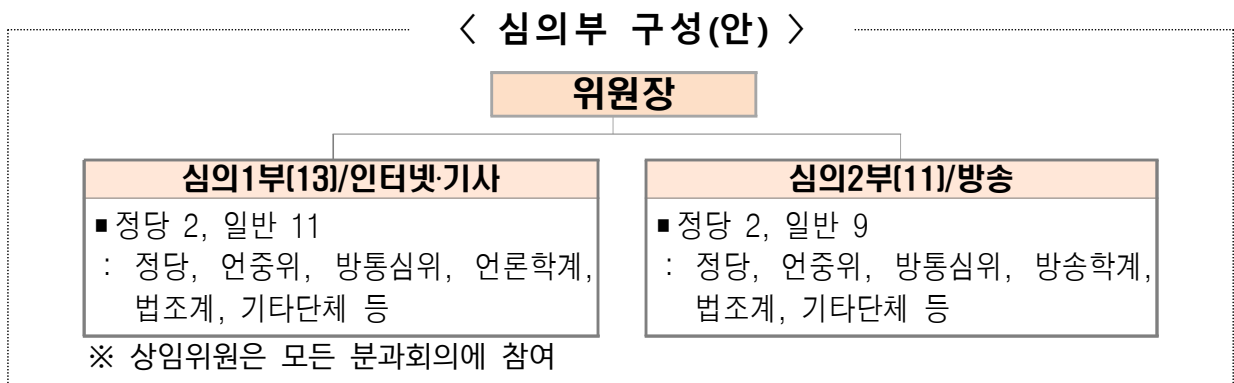
1 3개 선거보도 심의기구 설치 개요

-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 선거방송, 선거기사,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심의기구를 설치·운영

구분	인터넷심의위 (중앙선관위)	선거기사심의위 (언론중재위)	선거방송심의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설치 근거	•법 제8조의5 •상설기구	•법 제8조의3 •한시기구	•법 제8조의2 •한시기구
위원 구성	• 11인 이내 •위원장 호선, 상임위원 지명 •상임위원 제외 명예직	• 9인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모든 위원 명예직	• 9인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모든 위원 명예직
심의 방식	•정당·후보자 이의신청 •자체심의(모니터링/민원)	•후보자 정정보도·이의신청 •자체심의	•후보자 시정요구 •자체심의(민원)
조치 방법	•자체 처리 - 경고문 게재 등 7종	•언론중재위 통보 - 경고결정문 게재 등 7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통보 - 법정제재(관계자 징계/경고/주의) - 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

2 선거제도 통합심의기구 설치

- 방송·기사·인터넷심의위를 일괄 통합한 ‘**선거제도심의위원회**’(가칭)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적 상설기구로 설치
- 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총 25인 이내** 위촉
 - 교섭단체 정당, 언론중재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학계,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 추천
 - ※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최소 정수 확보
 - 신속하고 전문적 심의를 위한 매체별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필요적 조치사항
 - (1) 관련 법규정 개정
 -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8조의6, 제256조, 제261조 등
 - 설치기구, 위원구성, 심의대상(용어정의), 제재조치 등 전면 개정
 - 통합심의기관의 권한과 위상 부여 및 책임한계 설정을 위한 심의 대상 언론과 보도범위의 명확화, 제재조치 법정화 등 반드시 필요
 -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 심의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 방송심의를 방심위로부터 영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관간 업무조정 및 협조의무 부여
 -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 매체법 병행 개정 필요

(2) 사무국 설치

- 심의량 급증, 매체 다양화에 따른 사무국 기능 및 전문성 확대 필요
- 선거이슈, 쟁점사항에 대한 분쟁발생 대비 위원회 법률지원 강화
 - ▶ 現 인터넷심의위 기준 최소 13인 이상 증원(3팀 11인 → **1국 2과 24인**)
 - ▶ 심의전문 인력(언론관련 전공자) 및 법률 전문가(변호사) 충원

(3) 주요시설 및 소요예산

- 통합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확대
 - ▶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활용 시 각 분과 및 전체회의실, 사무국 신설, 통합 모니터링실 등 마련을 위한 대규모 재배치 실시
- 회의시설 설비, 통합 모니터링실 구성(컴퓨터, 방송녹화장비 등), 통합심의 시스템 및 선거보도모니터링시스템 등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시스템 등 구축·운영
 - ※ 민간망 사용이 필요한 시스템의 경우 위원회(국가망) 정보 보안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의 구축방향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 필요
- 공정선거보도 분위기 조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선거시기 모니터링 인력 확충 등 필수 예산 추가 소요
- 소요예산 : 약 55억원 정도
 - ▶ 시설구축, 위원 및 사무국 확대, 모니터링 인력 증원, 선거경비 등
 - ▶ 통합심의기반 완전 구축 및 유지비 포함

□ 3개 선거보도 통합심의기구 설치 장·단점

장점	단점
•통합심의 전문기관으로서 강한 권한과 위상 •‘선거보도’ 콘텐츠 중심 심의로 효율성·통일성 확보 •언론사, 정당·후보자 등 이해관계자 혼란 해소	•초기 업무혼선 및 심의지연 우려 •통합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방송녹화장비 등 초기 투자비용 과다

※ 정당·후보자 및 언론사 등 심의제도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관련 연구용역 필요

○ 최근 3년간 3개 심의기구 위원회의 및 심의현황

구분	인터넷심의위	선거기사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제8회 지선 (2022)	•위원회의 20회 •(심의) 217건 - 자체심의 169 - 이의신청 48	•위원회의 12회 •(심의) 68건 - 자체심의 65 - 시정요구 3	•위원회의 10회 •(심의) 74건 - 모니터링 25 - 민원 49(접수 128)
제20대 대선 (2022)	•위원회의 32회 •(심의) 376건 - 자체심의 235 - 이의신청 141	•위원회의 15회 •(심의) 85건 - 자체심의 73 - 시정요구 12	•위원회의 16회 •(심의) 233건 - 모니터링 14 - 민원 219(접수 2,080)
제22대 국선 (2024)	•위원회의 17회 •(심의) 355건 - 자체심의 287 - 이의신청 68	•위원회의 10회 •(심의) 64건 - 자체심의 57 - 시정요구 7	•위원회의 19회 •(조치) 총 83건 - 민원 373
제21대 대선 (2025)	•위원회의 17회 •(심의) 332건 - 자체심의 72 - 이의신청 260	•위원회의 4회 •(심의) 26건 - 자체심의 26 - 시정요구 0	•위원회의 00회 •(조치) 18건 이상 - 민원 18↑

○ 3개 심의기구 모니터링 현황

구분	인터넷심의위	선거기사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대상	• <u>5,000여개</u> 언론사사이트	• <u>450여개</u> 간행물 등	•지상파 TV, 라디오 전체 - 지역 민영방송, 케이블방송 포함 •유료방송사업자 전체 - 종편·보도pp, 일반 pp ⇨ <u>450여개</u> 녹화채널
고용 인원	•(상시) 3~4명 정도 •(선거) 최대 14명 운영	•(상시) 1~2명 정도 •(선거) 최대 4명 정도	•(상근) 3~4명 정도 •(지역) 70명 정도 * 별도채용이 아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모니터요원을 활용
모니 터링 방법	•모니터링실 집합 근무 •1인당 전담 언론사 등 할당 모니터링 •불공정정보 발견 시 추적하여 보고서 작성 제출	•언중위 내 별도 사무실 집합 근무 •심의대상 매체 모니터링 및 안전보고서 작성 •신문구독 및 빅카인즈 데이터, 거기간동안 언론사 제출 간행물 활용	•상근인력은 사무국의 모니터링, 안전준비 등 전문업무 보조 •지역 모니터링 인력은 영상이 저장된 웹서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시청 후 24시간 내에 보고서 작성 제출

8-1. 선거비용 미반환 금액에 대한 징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한 행정적 조치 강화 및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납률 제고를 위해 미반환금액 실태 관리를 위한 연 2회 현황 정비, 국세청 징수 재위탁(정기·수시),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 청구, 미반환자가 재출마하여 보전대상이 되는 경우 보전 비용 상계 또는 추심요청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수행 중임.
- 실질적인 반환율 제고를 위해서는 미반환자 인적사항 공개, 지방선거 미반환금의 지방자치단체 징수 위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바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할 예정임.

〈 참고사항 〉

-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3회, 2014. 10. 8., 2016. 8. 25., 2021. 5. 25.)
 - 선거비용 미반환자 인적사항 공개
 - 선관위 고발 또는 사직기관 기소 시 판결 확정까지 선거비용 등 보전 유예
 - 지방선거 미반환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처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8-2. 선거보전금 미반환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현행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미반환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며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제도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 미반환 선거보전금에 대한 세무서 징수(재)위탁과 그에 따른 압류 등 절차적 수단에도 불구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미반환금이 발생하며, 매 선거시마다 반환대상이 신규 발생하여 미반환금이 누적되고 있음.
- 미반환금 환수를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과 협력을 통한 징수 재위탁, 소멸시효연장 재판청구, 재출마자 중 보전대상자에 대한 지급예정 보전비용 상계 또는 추심요청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수행 중임.
- 실질적인 반환을 제고를 미반환자 인적사항 공개, 지방선거 미반환금의 지방자치단체 징수 위탁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우리 위원회는 상기 제도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2014년, 2016년,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에 관련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입법 논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 지방선거 미반환금을 「지방행정부과금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징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5. 12. 17.) 발의 및 정개 특위 논의 중

〈 참고사항 〉

-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3회, 2014. 10. 8., 2016. 8. 25., 2021. 5. 25.)
 - 선거비용 미반환자 인적사항 공개
 - 선관위 고발 또는 사직기관 기소 시 판결 확정까지 선거비용 등 보전 유예
 - 지방선거 미반환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처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9-1. 채용 청탁 및 특혜 등 인사 비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엄정한 징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재점검하는 등 실효적인 조직 쇠신 대책을 마련하여 대국민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

- 2025. 12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부정청탁 등 비위행위 시 인사관리, 징계 등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 부정청탁 및 청탁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요구 시 고등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5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심의의 공정성 확보
- 징계 처분과 별개로 타 시·도위원회 전보 조치, 주요 보직 부여 제외, 2회 연속 성과급 미지급,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추가 시행
- 향후에도 청렴 문화 조성 등 공직윤리 강화, 실효성 있는 감사·조치 등을 통해 채용 청탁 등 인사 비위를 근절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9-2. 신속하고 책임있는 결정, 사무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 수행, 장기적인 개혁과제 수행 등을 위해 선관위원장 상근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선거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책임있는 기관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상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다만, 위원장은 그 어떤 직위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므로 위원장 상근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위원장 상근제 추진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보장, 위원회의 책임성·효율성 향상 및 위원회 조직 구성과 관련 있는 대법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9-3.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관련 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외부인사 참여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위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역할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지명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24. 8. 19.)에서도 시·도 상임위원 외부인사 참여 확대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현재 시·도 상임위원을 외부에 개방할 계획은 없음.
- 앞으로도 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시·도상임위원의 역할 및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선거 및 정당사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명할 계획임.

10-1. 정당 등록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이른바 '현수막 정당'에 대해 정당법상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조직 실체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등록된 정당(중앙당 49개, 시도당 400개)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회계보고 불일치, 자료제출 요구 불응, 정당 소재지 허위변경 등록 혐의 정당에 대해서 고발 조치('26. 2. 12.)하였음.
- 앞으로도 정당·정치자금 사무 점검 시 정당 운영현황, 법정 의무 이행상황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

11-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한 공신력 있는 민주시민. 선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연계한 선거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선거교육 지원 관련 입법)를 마련.추진 할 것

- 우리 위원회는 선거연수원 주관으로 청소년의 선거 이해도 제고와 허위·조작정보 판별 능력 함양 등을 위해 ‘민주주의 선거교실’, ‘새내기유권자 연수’, ‘청소년 선거캠프’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교육부(청)와 협업하여 교원 대상 선거교육을 강화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내기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부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거교육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선거교육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음.

12-1. 전산망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적 보안 점검 및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선거 전산망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우리 위원회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을 통해 매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포함 위원회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추가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과 보호 대책 이행여부를 국무조정실 및 국가정보원에 제출하여 심의* 및 확인**을 받고 있음.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심의

** 기반보호실무위원회(국가정보원)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 또한, 중요 선거시스템에 대해서 매년 ISMS-P 및 ISO 27001·27701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선거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검증을 받고 있음.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 보안 점검 및 검증 체계 도입과 법제화는 헌법기관의 직무독립성과 선거정보시스템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유권자 개인정보 및 사전투표 여부 등 비공개 정보 다수 포함

12-2. 사전투표 및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장애·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망 분리 완전 이행, 서버 및 배터리 물리적 분리, 재해복구 전환 체계 실증 점검 등 선거 전산 시스템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우리 위원회는 외부 해킹 등 방지를 위해 사전투표통신망을 외부 인터넷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안전한 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또한, 전산센터 화재 등 재난 방지를 위해 UPS와 배터리의 설비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주센터(과천)는 금년 5월까지, 재해복구센터(대전)는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아울러, 선거기간 중 주센터(과천)의 재해·재난으로 인한 선거 사무 중단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대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정례적으로 모의전환훈련을 실시하여 시스템 전환 과정의 이상 유무 및 복구 조치 체계 등 점검을 통해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음.

1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산·서버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방호체계, 백업·소산 및 재해복구 체계를 종합 점검·보완하여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할 것

[국가중요시설 지정 관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는 '25. 12. 10.자로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었음.
- 국가중요시설 지정 이후 예산당국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인력 확충 및 시설 보강 등 방호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보안관리대 설치]

- 12. 3. 비상계엄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서버를 촬영하여 외부에 전송하였음.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를 위해 보안관리대 설치가 필요함.

[전산·서버 시설 보안 등 관련]

- 위원회 전산센터는 구역별 물리적 분리(제한·통제구역)와 RFID 및 생체인식(지문·홍채 등) 기반의 인증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출입 권한 점검을 통해 허가된 인원만 해당 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또한, 선거사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주요 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센터(과천)의 백업 서버를 활용해 일별·주별 백업과 재해복구센터(대전) 원격지 소산 백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아울러,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해복구센터(대전)에 통합명부시스템 등 주요 선거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기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13-1.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구조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 수준에 준하는 구체성과 투명성을 갖춘 감사결과 공개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감사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

- 우리 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에서 나아가 해당 원인을 분석하여 소관 감독부서로 하여금 관련 제도·절차를 개선·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체계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 밖에 올해 연간 감사계획 시달 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을 전달하고 교육 시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정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시·도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반복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체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한편,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외부 개방형 감사관이 통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또한, 국회 국정감사·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바, 구체적 공개 수준과 방법·절차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타 헌법기관의 사례와 판례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법익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겠음.

14-1.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헌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수사 진행 여부와 별도로 선관위 차원의 법적 대응 방침과 조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24. 12. 6. 우리 위원회는 계엄군의 위원회 점거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음.
- 또한, '25. 12. 1.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음.
-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수사기관(국가수사본부, 중앙지방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사 방호 CCTV 영상 109건을 제출하고, 관계 직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출석하여 계엄군의 위원회 점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14-2. 선거관리시스템 등 핵심 전산 인프라에 대해서는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계약 방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선거 직전 계약 변경 등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것

- 현재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사업은 사업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 변경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유지보수 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는 등 계약 이행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고 있음.

14-3.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 성과와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 자문기구들의 기능·역할·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우리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직쇄신안을 국민적 시각에서 검증받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음.
- 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자정노력과 조직쇄신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 우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언을 토대로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자문기구에 대해서도 기능·역할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중복 기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직혁신 및 선거절차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4-4. 계엄 및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직원 정신적 피해를 예방·완화하기 위하여, 일회성·개별적 상담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장기적인 정신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상담 지원 범위 확대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우리 위원회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직무 전념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선거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권역별 심리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를 통한 정기·수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문 진료 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1인당 20만원 범위 내의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직원 스트레스 경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권역별 심리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요 거점도시 외 지역 근무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고려하여 해당 근무지 내의 심리상담 시설 이용료 지원, 전문진료기관 진료비 지원금액 확대 등을 위한 '27회계연도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음.